

제41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7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02)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3)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79)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3)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5)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6)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4)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5)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4)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4)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7)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6)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3)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4)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5)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1)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8)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2)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14)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4)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9)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1)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4)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1)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3)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8)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2)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5)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1)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4)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6)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69)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8)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6)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2)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0)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3)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3)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9)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1)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1)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8)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9)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0)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3)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4)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35)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73)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8)
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5)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5)
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55)
7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1)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4)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6)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4)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6)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2)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3)
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62)
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9)
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80)
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7)
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4)
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2)
8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8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8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49)
9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19)
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7)
9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5)
9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5)
9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0)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8)
9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9)
9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9)
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4)
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8)
10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6)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8)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9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4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4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1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5)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8)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5)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5)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6)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5)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2)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0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78)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8)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4)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4)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7)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7)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6)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1)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8)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9)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3)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9)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6)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9)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4)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7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8)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8)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9)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59)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7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6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7)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0)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6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2)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74)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80)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1)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09)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7)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5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4)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24)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2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7)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5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4)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0)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1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8)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8)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0)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5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0)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94)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1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60)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11)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22)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1)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5)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6)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9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71)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60)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19)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9)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7)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5)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0)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1)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0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96)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5)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36)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0)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1)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8)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9)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4)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2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2)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0)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3)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7)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2)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1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6)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2)
2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8)
2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3)
2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4)
2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88)
2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2)
2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0)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2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9)
2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9)
2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41)
2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49)
29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2)
29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29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7)

29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0)
29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7)
30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8)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30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303.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6)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
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
3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
320.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3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3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
3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
3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1)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8)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3)
3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
3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4)
3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9)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0)

상정된 안건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5) 9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39)	9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9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06)	9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4)	10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2)	10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6)	10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10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8)	10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8)	10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3)	10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4)	10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5)	10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2)	10
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7)	10
3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1)	10
320.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1)	10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45
3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45
3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45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2)	50
3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9)	50
3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50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53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54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54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1)	54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8)	5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3)	54
3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54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	54
3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4)	54
3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9)	54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0)	54

(10시19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관세법 등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345)

3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339)

3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8)

3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806)

3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34)

3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32)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36)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71)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548)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88)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043)

3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104)

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195)

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02)

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47)

3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51)

320.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671)

(10시20분)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304항부터 319항까지 이상 16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0항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7권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이것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조세소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정부에다가 요구 리스트를 만들고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라는 요청을 해 주셔서 이렇게 ‘조세소위 요구자료’라고 하는 파일과 문서가 저희 앞에 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소위를 통해서 요청한 자료들 중에 일부만 들어 있고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가 이것을 살펴본 소감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10페이지에 있는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한시적 상향’ 요구자료에서 ‘16년도 공제율 상향 시 효과’ 이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인데, 정확하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 5년 동안 종교법인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을 분명히 응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자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다시 잘 검토를 하셔서 빠져 있는, 특히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적어도 오늘 중에는 보내 주셔야 최소한 1회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심사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보완을 최대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통해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부 측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되는 자료를 하나씩 다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죄송해요.

만약에 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는 게 어렵다면 일단 어떤 자료들이 요청되었는지에 대한 리스트라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공유하시고 자료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도 시간에 맞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자료 1쪽입니다.

관세조사의 정의 규정을 정비·이관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분산 규정되어 있는 관세조사의 정의 및 범위 규정을 정비해서 법 제2조의 정의 조항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조사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즉 통합조사를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에 세무조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특별한 것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이번에 조사 관련 조문을 앞의 정의 조항에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조문 정리 또는 관련된 체계 차원에서 다른 말씀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쪽,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안입니다.

5쪽입니다.

현행법은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을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서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각 자료를 광디스크 등 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대신 그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시행령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관방법으로 디스켓 등 저장장치 외에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 보관방법과 관련해서는 디스켓 등 정보 보존 장치에 자료를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산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부분도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이미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보관할 필요성은 적습니다만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납세자들이 보관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필요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어볼게요.

제출한 자료는 가지고 있도록 하는데 증빙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누가 나중에 입증책임이 있나요?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는 납세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법상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특히 해외 쪽에 있는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안 가지고 있다는 핑계로, 그런 경우가 실제 집행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게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나 장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위나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증책임을 누가 가지느냐를 제가 여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관련되는 서류를 보관 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면 되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모든 관련되는 서류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에도 이런 형태의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 세법에도, 국세기본법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의 세법 개정안은 신고자료는 당연히 납세자도 가지고 있고 관세청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가 더 이상 신고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도 된다, 우리도 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폐기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신고자료 말고 그 신고자료의 기초가 되는 세금 계산서 수수내역이나 아니면 계약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보관 의무가 없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이 계약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미국 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법률로 신고서류가 아니고 그 신고서류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걸 요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제가 우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민법이나 또는 기본법에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항 없으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쪽,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입니다.

8쪽입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제척기간 예외규정을 함께 정하고 있지만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에 불법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해서 명의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명의대여의 경우로 확인이 될 경우는 명의를 대여받은 명의의 실질명의자, 그러니까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와 과세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1쪽,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

세가격 결정자료 요구시기를 추가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등 과세·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조사의 정의 신설에 따라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와 분리됨에 따라서 관세조사 시에도 특수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3쪽,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하단에,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즉 보정기간에 납세자가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보다 부담이 적은 보정이자를 부과하고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 20%의 경감률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수정신고 시에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경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보정기간 경과 후에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경감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에는 보정기간은 없습니다만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수정신고한 경우

에는 30%,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는 20%,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10%에 대한 가산세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7쪽,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김주영 의원님과 정태호 의원님 그리고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회덤핑물품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기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가하거나 제삼국 또는 수입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물품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때에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재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 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 등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우회덤핑물품에 대해서도 기존의 덤핑방지관세를 소급부과할 수 있는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도입해서 덤핑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품, 그리고 김주영 의원님 안도 경미하게 변경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태호 의원님 안도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가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안은 우회덤핑물품의 경우에는 잠정조치 및 약속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소급부과의 범위를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회덤핑방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우회덤핑 문제가 발생해도 신규 반덤핑조사를 신청해서 원심조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회덤핑 요건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등 대통령령 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현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우회덤핑 유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후 우회덤핑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미국 또는 EU 등의 우회덤핑방지규정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 정부는 개정안 입법 시에 추후 각 우회덤핑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건전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규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수출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비교우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분업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우회덤핑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시행령이나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다른 EU나 미국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 가지고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리고 마지막에 우회수출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국제 분업상의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부분은 결국은 말씀 주신 그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제적인 사례나 또 실제 집행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일종의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나중에 시행령으로 잡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덤핑관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숙 위원 예, 현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이형철 관세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덤핑방지관세 19개 품목에 대해서 23개 확정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경숙 위원 주로 어느 나라 국가들로부터 우회덤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이형철 지금 여러 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가장 피해가 큰 산업 분야는 어디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철강 쪽하고 석유

화학 또 목재 이런 쪽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일단 위임해 달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시행령을 거쳐서 법령으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가 공감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도입하는 단계기 때문에 딱 법에다가 명확히 어떻게 넣는다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제도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또 법률로 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3쪽, 용도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하는 류성걸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까지 확대해서 수입되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안은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 그 용도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중 낮은 세율을 말하고 이는 같은 물품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다른 경우에 세율을 달리해서 국민경제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용도세율 적용 대상은 잠정세율, 긴급세율 등 9개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적용신청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하는 때부터 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되고, 물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서는, 용도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당해 조건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종결됩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덤핑방지관세 등까지 확대해서 수입되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려는 부분과 사후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확대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대상 수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등 세밀한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서도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 수요자 후생을 증진하겠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의 경우에 통관 당시에 동일한 물품인 옥수수에 대해서 통관 이후에 사료용으로 사용해서 할당관세 0%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세관장에게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고 3%보다 낮은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용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덤핑방지관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령 자동차 수입업체인 A 업체가 갑 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 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한 B 업체,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가 택시용이 아닌 일반 자가용에 대해서만 덤핑을 막아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용도세율 규정에서 덤핑방지관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갑 국 생산 자동차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용도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정부는 일반 자가용에 대해서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A 업체는 택시용 자동차 수입 시 택시용으로 용도세율을 신청해서 덤핑방지관세가 더해지지 않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이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

후관리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은, 현재 용도세율 적용신청제외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대신에 전용물품 확인서로 대체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행법 문언상 용도세율 적용신청제외 대상을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 낮게 정하는 세율 자체에, 즉 용도세율 정의 자체에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 현실에서도 한 가지 특정 용도로만 물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제외 대상을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과 류성걸 위원님 안은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은 뭔가 타기팅을 좀 더 정교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정국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제도가 막 하루 이틀 전에 도입된 건 아니니까 꽤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문제점도 그만큼 길게 발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해 왔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가요?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장 박경찬 산업관세과장 박경찬입니다.

그동안 덤핑방지관세 같은 경우에 관세 감면의 일종으로 봐서 감면제도에는 덤핑방지관세가 성격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강조되어서 배제되어 있지만 동시에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책의 유연성 측면보다는 감면 제도와 유사한 특성이 좀 더 강조가 됐었던 것이 고요. 최근에 와서 정책 유연성의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어서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장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발의를 했는데, 날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차관님께서 정부안과 류성걸 의원안이 동일한 취지라는데 류성걸 의원안에 정부안을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는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런 용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관세가 전부 다 이렇게 용도세율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다 포괄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전에는 이렇게이렇게 제외되었던 게 다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0쪽, 품목분류체계 수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정부안입니다.

31쪽입니다.

현재 HS코드 품목분류체계란 세계관세기구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위해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분류체계를 말하며 5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를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상 세목은 HS 6단위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S 6단위 코드만으로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세분화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는 6

단위를 세분화하여 10단위의 코드를 기재부 고시 운영 중이며 실제 수출입통관 시에는 이에 따른 10단위 코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품목분류체계 수정 대상에 품목분류표를 상향입법하고 수정사유 중에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삭제하고, 수정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이 품목의 삭제, 신설 및 재분류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수정사유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품목분류 수정사유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정사유 중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품목분류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사유가 아니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따라 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품목분류가 수정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수정사유에는 현행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도 존재하므로 개정안은 수정사유 중에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삭제하고 수정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추가적인 설명 해 주십시오,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품목분류체계의 수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수정사유나 수정내용의 의미가 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3쪽,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정부안입니다.

34쪽,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는 수출입자, 제조자 및 관세사 등이 수출입신고 전에 통관하려는 품목분류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는 제도로써, 현재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등’에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외에 수출입자, 수출물품 제조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고, 앞서 심사한 개정안 84조의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심사내용에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뿐만이 아니라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신청인의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중 세 번째, 신청인의 사전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입신고 물품의 품목분류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시·공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신청인과 관련해서는, 조문에 신청인이 죽 나열되고 ‘관세사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관세사 등의 범위나 이런 부분의 해석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상에 좀 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법에 명확하게 절차나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여기 36페이지에 신청인의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소위원장 류성걸 직·성명 다시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장 박경찬 산업관세과 박경찬 과장입니다.

수출입신고가 있거나 내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있었을 때 소관 담당자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회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것, 담당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데요. 그것도 더 어려울 정도가 되면 관

세품목분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심사 신청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시라거나 이런 경우에 쟁점이 되는 경우 세관 직원이 직접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개정을 냈고요. 실제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을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하는 배준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관세감면율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감면기간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WTO 민간항공기협정), 이하 TCA로 하겠습니다. TCA 대상 품목에 포함된 항공기 부분품과 비TCA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상향하고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제조·수리공장에서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TCA 대상 물품과 TCA 비대상 물품을 구분해서 상이한 관세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TCA는 협정 가입국 간에 민간 항공기 및 그 엔진·부품·구성품 등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1980년부터 시행한 다자협정으로서 2023년 현재 미국, 영국, EU, 일본 등 33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TCA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 가입국의 정부조달 시 특혜 등 방지, 정부보조금·수출혜택 등 정부지원의 원칙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항공기 부분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은, 2012년까지는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전액 면제하였고 2013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를 100% 면제하는 반면에 중견·대기업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부칙 개정을 통해서 감면율을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감면 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연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21년 정기회에서는 항공기 부분품 중 TCA 대상 물품에 한정해서 관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고 TCA 비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면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현재 비중소기업이 TCA 대상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100% 면제되고 TCA 비대상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50% 면제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 MRO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미국·EU·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은 TCA에 가입해서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TCA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개정안과 같이 국내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으로 인해 국내에서 항공기 부분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유치산업 보호 차원에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관세법에 따른 특례를 두는 현행 제도에 비해서 FTA나 TCA 가입 등 무역협정을 통해서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많이 좀 복잡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련된 사항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안과 관련해

서는 그동안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21년 정기국회에서 TCA 대상 물품의 경우에 24년 말까지 3년 연장,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CA 물품의 경우에는 일단 24년 말 또 내년에 일몰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한번 재검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비TCA 물품의 경우에는 어쨌든 합의를 통해 가지고 100% 감면이 아니고 일정 감면율을 점차적으로 줄여 가는 것으로 합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100% 감면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비TCA 물품의 스케줄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일단은 기재부 입장이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사실 정부 측에서 TCA 가입하는 것을 검토한 게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산업부 측에서는 총 7조 정도 되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장벽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의 TCA 가입에 대한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기본적으로는 TCA 쪽에 가입을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호주, 브라질 등 이런 국가들은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서 결국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보조금 부분을 일시에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TCA 가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부보조금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이게 MRO 산업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비행기 수리를 하는 게 대개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

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천을 정했었지요, 그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정태호 위원 정해 가지고 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하고 MRO 산업 육성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재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전망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국내의 MRO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관세 부분을 정상화를 했을 경우에 당장에 항공업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균형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지를 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관세감면율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미래까지, 연도까지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완화를 해 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매번 다시 리뷰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좀 관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꼭 대기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는 게 중소기업도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현재 국회에서 정해주신 이 스케줄대로 가급적 이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TCA는 내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에 50% 됐던 것을 다시 또 100%로 돌리는 안입니다.

지금 배준영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 부분은 배준영 위원님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3쪽,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가세 면제하는 조특법에서 같이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관세를 면제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를 해서, 특히 센터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전문위원 김경호 47쪽,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를 정비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의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 알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복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를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서 관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국세·관세·지방세의 경우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을 규정하면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포탈은 납세의무자 또는 행위자의 고의 및 부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관세법칙조사 대상이므로 관세법칙조사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형사절차상의 수사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에 관한 중복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현행법은 체계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조사 허용사유에서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이 충분히 정부안 취지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세·지방세의 경우에도 조세탈루로 이런 해석의 여지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법에서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관세 체납·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양경숙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 그리고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현행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의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의 기준금액을 낮추어서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2011년 채납액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7억 원 이상으로, 이후 12년에 5억 원, 15년에 3억 원, 17년에 2억 원으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과 정부안은 관세포탈죄, 부정감면·면탈, 부정환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고, 양경숙 의원님 안은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채납액 2억 원 이상인 채납자에서 1억 원 이상인 채납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님과 정부안과 관련해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건이 지속·대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고액 관세포탈사범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2022년 관세포탈사범 적발 건수는 50건으로 2018년 대비 약 70% 감소하였지만 22년 포탈 적발금액은 3228억 원으로 1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개정안은 포탈관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러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즉 가령 3년간 매년 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결로 확정된 전체 포탈관세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의 경우에도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명단공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포탈범은 20년에 35명, 22년에 47명 등입니다.

다음 53쪽, 양경숙 의원님 안은 조세징수 형평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채납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하향하더라도 22년도 기준 추가로 공개되는 인원의 채납액이 약 250억 원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 의견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에는 채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채납자의 인적사항 및 채납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은 조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금 빠져 있어서 그 경우도 2억 원 이상은 공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양경숙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주신, 연간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하다 보니까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지금까지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매년 1억씩 해서 2억이 넘는다는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과연 한 번 2억이 넘었다고 해서 계속 공개해야 될 거냐, 아니면 기간을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잡아서 공개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나 방법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액 자체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었습니다만 그 대상이나 금액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관세청이 매년 고액·상습채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모니터를 해 보니까 채납징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가 249명이었고 2023년 7월 말까지 고액·상습채납자로부터 걷은 채납징수액은 2억도 안 됩니다. 1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채납액 대비 징수 실적

이 0.1%가 아니라 0.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징수 실적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징수 실적이 높아지면 모르겠는데 계속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서, 2020년에 그 금액 기준 징수율은 0.34%였는데 2021년에는 0.13%였고요. 작년에는 0.02%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재부가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9월 국세 수입현황을 보면, 1월에서 9월 국세 수입이 226조 6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50조 9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연말까지 가면 59조 세수 펑크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9월 이후에 연말까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 다 하더라도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 대비해서 최소한 한 56조 원은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고 73조까지 발생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감세, 조부자 감세에서 기인한 게 큰 건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고액·상습채납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도 상당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내는 걸 회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각심도 이제는 사라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대로 정부가 추진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납세도 이런 규제를 강화해 놓으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세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당초 저희들이 전망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그 추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것보다 조금 더 거두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고액채납자들 징수를 아주 강하게 해서, 세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징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관세청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방법을 고민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2억 원

이상 채납자 공개한 대상이 거의 한 98%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억 원으로 내릴 때, 정부가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채납세액 규모가 1억에서 2억 사이가 한 250억 정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1억 원으로 내리는 부분이, 또 이게 국세 관련 법도 고쳐서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 1억 원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다,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양경숙 위원님 생각에 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보면 250억이 아니라 25억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오히려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야 되지, 250억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물론 전체 채납을 의도적으로 매년마다 1억씩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3년간 또는 수년간에 걸쳐서 2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2억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 그게 사실은 더 나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2개의 예를 같이 해서 하고.

지금은 조세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그것도 또 아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4쪽,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배준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해서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전송 과정에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전송대행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현행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납세자의 동의 시 관세청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의 확인·심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기업이 자사 무역데이터를 쉽게 활용하여 무역금융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세정보의 제삼자 제공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돼 있어서 민간기업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7쪽입니다.

한편 최근에 개인의 신용정보,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기반 정보 제공은 물론 최근 전송요구권도 보장해서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자정부법에 따라서는 자연인인 정보주체는 국세 및 관세에 관한 정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세무사 등 제삼자에 의한 신고대행을 활성화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과 같이 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없는 경우에 납세기업은 직접 과세자료를 발급받아 관세사 및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관세사 또는 세무사는 이를 받아서 관련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는 경우에 기업은 자사의 신고자료를 1년 주기로 관세사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관세사는 전송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곧바로 신고를 이행할 수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 둘째,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전략 컨설팅 등 시장을 활성화하게 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관세사·세무사 등 제삼자에 의한 신고대행을 활성화해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상 관세사법 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세무사법 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대해서 과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라서 관세사·세무사가 아니지만 통관업·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 세무법인 등의 법인이 포함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1쪽, 개정안은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납세자의 요구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납세자의 전송요구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116조의6에서 납세자는 각호, 즉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또는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특정해서 전자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전자정부법 등에서도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방법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부법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그렇고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 통제권리를 강화한다 또는 관련되는 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준영 의원님 안의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준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세무 관련된 법인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배준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전문위원님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관세청에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담당 국장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발언대

로.

○배준영 위원 전문위원이 낸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누구시지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정보데이터정책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민원서류라든지 또는 이런 걸 처리할 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걸 굳이 제출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됐고 국가기관 간에 또는 관련되는 서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중간의 예에서도 나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키고 또 효율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동의를 하고, 수정의견에 대한 사항을 정부하고 배준영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관세 심판청구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관세의 심판청구에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규정을 일괄적으로 준용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관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규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관세법의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세의 심판청구와 관련해서 심사청구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관세법상 심사청구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그 앞 항에 관련해서, 이건 관세법만 이런지 다른 관련되는 사항도 정부에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잠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65쪽, 선상 견본품 반출·채

취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구역에 반입·장치된 외국 물품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상거래 및 건전한 무역질서 수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항 전 수입통관하는 원유 등의 물품의 경우에도 성분 분석 등을 위해 하선 전 견본품을 채취·반출하는 검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관세청 지침에 의해서 견본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최근 3년간 메탄올, 가솔린 등 물품에 대해 선상에서 견본품을 채취한 실적은 1530~1648건 정도입니다.

개정안은 현재도 관세청 지침에 의한 선상 견본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국제무역선 선상에서 견본품을 반출·채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물품의 관리 및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보세구역, 즉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해서 세관공무원의 참여 및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구역 자율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의 반출입 내역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실시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 생략 업무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를 법령화해서 보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해서 미성년자도 보세사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한 등록신청은 성년 이후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직업선택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현행 관세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보세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보세사 시험 추가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미성년자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자격사 간 미성년자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자격취득 절차의 최종시점, 즉 등록신청일 미성년이 되는 경우에도 절차의 초기 단계인 원서접수일에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직업선택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고 현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닙니다. 이게 다른 자격사들과 다 같이 해서, 등록할 때는 나이 제한을 받지만 시험 응시하는 단계에서까지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걸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그러면 자격을 따고 등록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냥 자격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이게 다른 데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물론 기재부가 아니라…… 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이 자격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신청한다든지 할 때 이게 전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관련 자료를 보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연령 관련해서 전부 다 철폐해야 되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청년들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폭을 넓혀 준다는 그런 취지는 분명한데 몇 개의 자격증 또는 한정된 부분에만 적용이 될 건지 다른 부분에까지 적용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현재는 법제처가 중심이 돼서 국가자격 45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국가자격에 한해서 응시자격하고 등록자격을 구분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가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그러니까 관계 부처가 다 동시에 하는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연령에 관련되는 사항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자격증 관련되는 사항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령 제한을 하는 데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헌법적 가치에 관련되는 사항이,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이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전체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시험 영역을 열어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것의 효과가, 그러니까 정말 응시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고 합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이 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들한테 다른 자격사와 관련된 자료는 없고요. 일단 보세사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가 시험에 응시했다가 나이에 걸려서 떨어진 사례 자체는 없습니다.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케이스고요.

다만 전체적인 틀을 맞추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의 일할 기회가 충돌하는 경우는 특별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은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헌법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것이냐, 아니면 일단 45개 자격증이라도 맞추고 시작할 것이냐, 3개 중에 하나의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근본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45개를 특별히 더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진선미 위원** 방금 얘기하신 거면 일정한 점수가 넘으면 다 자격증을 주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없겠지만 숫자를 딱 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을 뽑거나 할 때 당장 일을 하기 어려운,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세무사 이런 분들은 수가 제한돼 있지 않나요, 합격자 수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통상적으로 수를 제한합니다. 레인지로 하긴 하는데……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한 결과 그런 것도 체크하셨을 것 같아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법제처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를 추가하는 정부안입니다.

73쪽입니다.

현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는 포함되어 있지만 21년 신설된 보세사의 명의대여죄는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

세사의 명의대여죄도 결격사유에 포함해서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과 중소·중견기업 운영인 혹은 중소·중견기업 제품 여부에 따라 특허수수료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은 매출액의 0.01%를 특허수수료로 하고, 대기업 보세판매장은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매출액의 0.01%, 그 외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1~1%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의 연혁은, 2013년 이전에는 다른 특허보세구역과 마찬가지로 특허면적에 따라 분기당 7만 2000원에서 51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하였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면세점 특허사업자의 독점적 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일정 부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13년도에 관세법 개정을 통해서 타 특허보세구역과 수수료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7년 이후는 현행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누진 구조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2년 기준 전체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규모는 15조 8410억 원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487억 6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쪽입니다.

특허수수료는 행정관청이 부여한 독점적 권리로서 그에 따른 이익의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영업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서 특허수수료 도입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판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 전체 매출액은 15조 8410억 원으로 18년에 비해서 17% 정도 감소하였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매출의 경우 2022년 2761억 8800만 원으로 18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특허수수료는 독점적인 특허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 독점적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대기업의 경우 매장별 매출액의 0.1~1%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0.01%를 특허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9쪽 둘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 성과 및 판매관리비 등 특허 자체의 가치와 무관한 요소로 수수료가 결정되므로 특허권에 대한 적정한 경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특허권을 부여하고 받는 특허수수료를, 수수료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를 내줄 때 그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무엇으로 볼 거냐 하는 측면입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에 특허를 내줄 때의 가치는 당초 어떤 이익의 변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 도입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면적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결국은 특허를 얼마나 크게 많이 받아 가느냐 하는 거로 했다가 14년에 면적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면세점들이 상황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수수료를 내야 되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의 틀을 보면 실제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늘고 줄고 할 수 있

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 받는 반대급부로서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출액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것도 보면,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로서 매출액이 적절하다고 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지금 면적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갈 때 정부 측 논리는 그것이 독점적 권한 부여에 대한,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다 이런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고용진 위원 그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고, 그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었고.

그러면 우선 질문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하지 않고, 이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너희들 매출액 기준으로 내라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는 논리냐고요. 매출액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건 아닙니다.

○고용진 위원 아니면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관세든 법인세든 뭐든 부과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흔히 없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지요.

○고용진 위원 그래서 그때의 논리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가 그때야말로 황금알 낳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그때 영업이익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정액제도 아니고……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액제고, 중국 같은 경우가 하이난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이거는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어떤 근거, 논리는 뭐냐는 거지요, 돈을 많이 걷겠다가 아니라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정정훈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어쨌든 면적에서 매출액으로 넘어왔는데 그 취지는 특허라

는 것은, 특히 보세판매장의 특허라는 것은 모든 간접세를 다 면제를 해서 굉장히 싸게 팔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그 크기는 결국은 내가 100평만큼 매장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너는 100평의 권리를 얻었구나. 너는 1만 평의 권리를 얻었구나, 그러면 10배의 권리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넓이에 따라서 100평에는 얼마, 1만 평에는 얼마 이렇게 부과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넓이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그 특허의 어떤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당시 12년의 치열한 논쟁 과정이었고 그 특별한 혜택은, 남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면세품을 팔 수 있는 권리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결국은 얼마를 팔았느냐가 면세점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다라는 판단에서 당시에 매출액으로…… 고용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결정이 됐고, 매출액이 영원한 가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논쟁이 그때도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매번 이 문제를 대할 때마다 납득이 좀 안 된다, 영업이익에 따라서 세율을 세게 하든 뭐 하든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매출액에 대해서 했다는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그게 특권이니 그리고 너희들이 손해 날 일이 절대 없으니 매출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계산도 간편하고 좋지 않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조차도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닌가, 합리적인 과세 방식을 두고 특정한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면적에 따라서 가다가 매출액에 따라서 가고 이런 것은 그 사업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 지금 또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이제 면세산업이 과연 정부가 혜택을 부여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사업이냐, 이것 이제 또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전에 관세청장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지요.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에서 지금은 글로벌 경쟁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토론회에서 밝힌 관세청장의 생각이에요.

지금 특히 중국이 면세점 사업에 아주 깊숙이 뛰어들고 여러 가지 관광업계가 변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던 말이에요. 위기의 산업으로 가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그래도 독점적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과세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매출액에 대해서 하느냐라는 민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바뀌 주자는 애기지 그것을 과세하지 말자는 애기가 아니에요. 적자가 났는데도 계속 걷어 간다, 그 전에 왕창 벌었으니까 적자 나도 조금 내라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시기는 안 온다고 보고 설사 또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감면을 좀 해 줬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은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다 면허 반납하고 철수했어요. 이게 어려운 산업이 됐으니까 만일에 어렵다고 그러면 보완 조치라도 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안도 굉장히 좋은 안인데요. 제가 볼 때는 면적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면적 기준으로. 왜냐하면 기업의 영업능력이라든지 기업의 활동에 따라서 세액이 변경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더 팔 수도 있고 더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어차피 면적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논의와는 좀 다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교육세 같은 부분도, 유가증권 이익에만 가산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합리적으로 과세를 바꿔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고용진 위원님이랑 유동수 간사님 얘기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또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특허수수료가 세금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장혜영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익에,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측면에서, 과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길 것인가에 대한 합당한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과세와는 다른 권리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측면이라는 점을 정부가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영업이익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과세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익으로 잡는 부분은 사실 수수료의 성격이나 특허수수료에 부과하는 이율을 보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면적으로 할 거냐 매출액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특허권의 가치라는 것을 면적으로 도입을 했을 당시에는 도입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매출액으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변동이 심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살펴보시면서, 물론 우리나라가 한때는 세계 1위의 면세점 국가였고 그런 차원에서 특수성을 반영할 때는 그렇다 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것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그렇게 특수하게 하려면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국가가 허가하는 사업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저는 그 바탕에 그게 있다는 거지요. 돈을 엄청 버는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매출로 했던 거고, 이제 그것이 과거와 조금 다른 여건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또 그냥 여러 문제 제

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저는 정해 주는 게, 그것이 면적이든 아니든……

그런데 매출액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고용진 위원님하고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드는 생각은, 어쨌든 영업이익으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결국 통상적으로는 지금 내고 있던, 적자를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0원으로 가는 것이고 적자가 아닌 큰 흑자를 보는, 만약에 평년의 경우라고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10%라고 따지면 결국은 지금 내던 수수료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면적이 맞느냐 매출액이 맞느냐 영업이익이 맞느냐, 그건 저희들이 해외 사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면적이 맞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2년 전처럼 면적이 맞으니까 1평에 한 10만 원 받으면 된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면적이 한 1만 평이 되면 최소한 10억, 100억은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바뀌 가지고 0 또는 100% 또는 90%가 감면되는 구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바꾸면 지금의 율을 최소한 3배에서 5배로 올릴 건지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수수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나 그다음에 그 가치의 어느 정도를 공익을 위해서 환수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나,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도 이런 형태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면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판매가 잘됐기 때문에 어디를 하더라도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면적 중에서도 면세점의 위치에 따라서 판매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목이 안 좋은 데를 하도록 하고 다른 외부의 면세점은 목이 좋은 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조세소위에서 똑같이 논의를 했으니까 그때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가치에 관련되는 게 연결돼서 특허수수료와 관련해서 얼마를 할 것인가인데, 지금 영업이익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익도 있을 거고 영업이익도 있을 거고 또 당기순이익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되, 그때 당시에는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례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대신해서 또는 대위 변수로서 매출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또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수를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적으로 하더라도 목에 따라서 매출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게 손익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수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손실 관련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게 결국은 미래의 손익을 현재로 환원을 해서 가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 예도 보시고 또 과거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것도 보시는데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할게요.

기본으로는 얼마 하고 추가적으로 얼마 하는 그런 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특허를 그렇게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

구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때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양경숙 위원 저 한마디만……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양경숙 위원 특허수수료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할 경우에 독점적인 판매 권리는 계속 누리면서 ‘영업이익이 안 납니다. 우리 영업이익 마이너스예요’, 대부분의 면세점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방안 같은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법인이 결산을 하니까, 감시를 하니까 영업이익을 속인다는 전제는 회계감독과 세무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같은 취지의, 저희들 걱정 중의 하나는 어쨌든 영업을 좀 더 성실히 하고 뭔가 사업구조가 뛰어난 회사와 영업과정에서 다양하게 좀…… 느슨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한 기업과 매출은 똑같은데 그때 그 영업이익으로 과연, 어쨌든 ‘저는 영업이익이 조금밖에 안 났습니다. 저쪽은 많이 났지만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같이 부과하는 게 맞느냐, 그런 측면은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같은 중재안에서는 기본 얼마에다가, 기본이 뭐 면적이 되든 매출액이 되든 이걸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기본 플러스 또 실적 이런 것을 가미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제안을 주신 것 같고요.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은, 그것을 속이는 개념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성실함과 유능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합리적이냐, 저희들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하여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제가 기본이라고 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는 다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게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완전히 영업이익으로 한다면 그 기회비용을 우리가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면세점 송객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진선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송객수수를 매출액의 30% 범위 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최근 면세점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송객수수료가 급증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해서 송객수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최근 2021년 송객수수는 3조 8745억 원 수준으로 2018년 1조 3181억 원의 약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은 22년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과제로 선정해서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2월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세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송객수수료 등 자정노력 사항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개별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수준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면세점 송객수수료 한도를 설정할 경우 면세점 후발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적극적 영업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업체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송객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기보다는 업계의 논의와 자율적 개선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송객수수는 경기 상황, 업황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참고로 시장가격의 상한선을 법령으

로 정하고 있는 사례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의 상한 그리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상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상한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가격상한제는 일반적으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송객수수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관련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수수료를 법률에서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업계의 어떤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랄까요,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이런 수수료 가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과 또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그 업계의 어려움을 들어서 이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간단회도 꽤 오랫동안 지속했고 지난번에 공식적인 간단회도 마련했을 때 그 협회에 모여 있는 면세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아져 가지고…… 사실은 이게 입법 체계나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저는 오히려 송객수수료나 이런 거를 공식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사실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율이 안 되는 거를 계속 자율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어서 이 법안을 결국은 하게 된 건데.

실제로 이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객수수료라는 게 합법화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걸 손 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이 이 표를 만들 때도 면세점 쪽의 조력을 받아서 대략적인 송객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대량 판매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송객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51.5%예요. 그러면 9조 원을 팔았다고 하면 그중의 4.5조원이 다른 사람의 손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매하는 별도의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자율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정부에서 무슨 특허 다시 발급해 준다거나 심사하는 데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행령에 그 상한선은 정하되 이 상한선을, 아까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 법안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수요자의 공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상한선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결국은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일반면세점을 활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지점들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송객수수료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상한을 어느 정도는 법에 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에요. 일시적이고 사정변경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시행령에 대해서 참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행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시기적으로 제한을 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의 비율도 조정하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제도를 한 번쯤 도입해 봐야 된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몇 십억의 예산을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건데 몇조원이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또 악용이 된다는 거 이것 자체는 정말 저는 동의하기가 실제로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인도 문제도 사실은 제가 법안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세품이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심각하다고 제보를 받는데 여기서는 특례를 적용해서 적발 건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이런 계획도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도입 한번 해 보고 이게 문제가 되면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규제가 어렵고 이대로 놔두기에는 참 상황이 너무 어렵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관세국도 그렇고, 위원님도 간담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상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업계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선두주자도 있고 후발주자도 있고 여전히 잘되는 데도 있고 많이 어려운 데도 있고, 의견 일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 달라. 각자 다양하게, 예를 들면 송객수수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어떤 면세점은 ‘현금만 넣어 주십시오’, 어떤 데서는 ‘물품 제공까지만 넣어 주세요’, 어떤 데서는 여기 의원입법안에 나온 것처럼 ‘금전·물품·편의·노무·향응·그 밖에 경제적 이익, 하여튼 모든 게 다시 소비자한테 돌아갔다면 그게 다 송객수수료입니다. 다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다. 과연 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연 업계의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거기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것은 송객수수료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의원입법안이 맞다,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원입법안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 대비 송객수수료가 50%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다이공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이공 의존도가 올라가면서 5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규제 대상에 다이공은 빠집니다, 또,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에 대해서 30% 한도를 걸어 달라고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공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다이공은 왜 빠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고 그 취지와 효과와 향후 흐름 등등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반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지키면 바로 면허를 박탈할 것이냐 영업 기간을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주의를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송객수수료의 정의에서도 있었는데 다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출액 대비 30%니까 그러면 30%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다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편익·노무·향응을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지금은 스스로가 그냥 참고자료로 관세청에다가 제출하고 국회에다 제출하니까 이렇게 ‘3조 8000억입니다’ 하고 숫자는 나와 있지만 이걸 30%를 지켜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관세청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편익이나 노무나 향응에 대해서까지, 어떤 편익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다 그걸 다 관세법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법의 취지는 저희들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더라도 하여튼 갈 길이 굉장히 먼, 힘든 길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선뜻 동의하기는 힘든, 대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선미 위원 이미 이것을 다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규제 대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데 규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것으로 계속 이걸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지금은 합의될 수 있는 내용 아니면 합의를 안 하더라도 납득될 수 있는 내용으로 최소한으로 시작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효과가 없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다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도입을 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오늘 면세점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이 면세사업이 국내에서의 경쟁이걸 넘어서서 국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중국 다녀오면서,

중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이 해남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이쿵은 이제 더 이상 한국으로 안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객수수료가 지금 50%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30%도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의 경쟁을 넘어서서 중국이든 인근 국가의 면세점 육성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과 거기에 맞는 제도들의 정비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진짜 이게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자율 경쟁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세제실장 표현대로 이 송객수수료의 정의, 본질에 관련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에는 음성적으로 시작됐던 이 송객수수료가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뭐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가버렸다 이거지요.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무, 향응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송객수수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법에 의해서, 관세법 개정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광객을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문화체육관광부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진작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서 함께 하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으로 가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손을 놓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우리가 기재위 차원이니까 법을 발의하신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장님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완전히 놓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집행가능성이나 실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부분에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 안이, 초안이 되면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자료 83쪽입니다.

22번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를 추가하는 정 부안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체납자의 일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체납자의 휴대품 유치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대품 유치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세관장에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청 훈령에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류는 주로 고가 명품가방이나 신발, 고액의 현금 문치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류금지 재산, 매각 후 체납액 충당가능금액이 미미해서 압류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세관장이 판단하는 물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기준 국세 체납자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압류 건수는 8건이고 금액은 4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고 압류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여행을 할 때 체납자인 게 확인이 되면 휴대품을 압류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 건수가 8건에 4700만 원 정도인데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의 충분한 효용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지요.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는 알겠는데 갖고 가던 거, 몸에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체납자들이 이걸 알면 고가의 제품은 안 들고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체납 징수의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휴대하는 물품으로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굉장히 큼니다. 그러나 체납을 했는데 고가의 가방이나 고가의 물품들을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 하는 것도 사실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고가의 물품을 모르고 들고 나갔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고 알면 안 들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인권, 인격 이런 걸 감안하면 효과에 비해서는 개정의 효능감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얘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거래법에서도 사실 불법이기는 하겠지만 고액의 현금을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니깐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도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조해진 위원 입법화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제외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걸 꼭 이렇게 법에 안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데 굳이 법에 근거를 넣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더 명확하게 하고 의지를 보이고 싶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다툼을 없애자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내 달러를 현지점에서 가져가냐’, ‘왜 내 가방을 가지고 가냐’라고 했을 때 ‘관세법 몇 조에 의해서 체납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조해진 위원 훈령도 근거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무래도 요즘 위낙 법적인 지식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훈령의 위임근거가 몇 조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이거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신고 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태호 의원님과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보세운송 기간, 통로 관련 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이 수입물품의 운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 입법 제안이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이 있고 정태호 의원님 안이 있는데 내용은 같고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경과, 정부안은 24년 1월 1일부터인데 만약 입법을 한다 그러면 굳이 6개월 경과기간을 둘 필요 없이 그냥 1월 1일부터 하면서 그 이후에 적발되는 부분부터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정태호 위원님 안 계신데, 정태호 의원안에서 6개월을 둔 건 통상적으로 입법례를 준수한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한을 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 절차를 도입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국제무역선 소속 선박회사가 환적물품 등을 국제무역선으로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현행법은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만이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위한 운송수단은 국내운항선 등 국내 운송수단이어야 하므로 국제무역선의 경우에는 국제항 내 선박 화물운송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국내 운송수단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러한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이 차용하고 있는 국제항 내 화물 선박운송은 가령 부산항 내에서 북항과 신항을 동시에 기항하여 외국으로 운항하는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의 운송 수요를 뜻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국내 환적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에 신항과 북항을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을 이용하므로 추가적인 운항비가 발생하지 않고 하역비만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운송 대비 17.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한국해운협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할 경우에 현재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고 보세구역 간 보세운송을 하고 있는 기존 화물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사업기회 손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운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항과 북항 간 선박운송 예상 물량은 연 1만 2000TEU로서 신항과 북항 간 전체 환적물품 물동량 120만TEU의 약 1%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검토의견 마지막 부분, 기존 화물차 보세운송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했고 그 이후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화물차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겁니다. 되고, 지금 현재 북항이나 신항 이런 데 국제화물선이 움직이는 데 아주 제한적인 그런 파트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화물차에 영향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 근거를 마련해서 제재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두어서 운송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사유와 수준 등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7개의 개별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행정제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처분이므로 국민이 그 기준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하되 법률의 명시적 위임을 통해 고시

로 정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제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고시로 직접 위임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안은 사실 정부가 이번에 세법 입법예고를 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지금 위임 근거 없이 관세청이 정하고 있는 고시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걸 바로 관세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썼고요.

그런데 현재 관세청에서 관련해서 7개 개별 고시의 80여 개 조항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법에 담고 어떤 걸 시행령에 담고 이런 부분의 작업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세법을 개정할 때 정비를 해서 가져오겠다 하고 이 조항을 빼고 세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다른 입법에서는 관세청장한테 바로 위임을 한 근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법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또 집행을 할 텐데, 다만 법제처에서 그런 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로서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시행령에다가 위임할 경우에는 이걸 정할 때 시행령 개정 절차를 또 일일이 거쳐야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거기에 불편함은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도 불편하고요. 지금은 전부 관세청장의 고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고…… 전부 다 시행령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관세청에다가 위임을 해서 고시로 운용할 건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다 보고 갈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단기일 내에 저희들이 준비하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법제처 의견은 구속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법제처가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냥 고시로 위임할 경우에 나중에 정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을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법제처에서도 그런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요건은 딱 정확하게, 똑같은 건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에 입법을 할 때 그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할 부분 이런 걸 나눠서 가져오라, 그렇게 입법을 정비하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일단 고시로 해 놓고 중장기적으로 분류 작업을 거쳐 가지고 시행령, 고시로 나누고 그 방침을 법제처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그래도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법령을 통해서 쪽 정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현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관세청 고시의 위임 근거라도 한번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전체 법체계를 만드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법제처에 미리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리되면 그건 실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이걸 나중에 정리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입니다.

96쪽입니다.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 대상 물품에 한정하지 않고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세관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7쪽입니다.

최근 마약 등이 포장용기 등에 은닉되어 국내로 반입되고 있지만 현행 관세법상 손실보상 대상

은 검사 대상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적법한 물품검사로 포장용기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종 민원 제기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세관이 검사한 수출입물품 대상 손실보상 집행 건수는 37건, 집행액은 1141만 원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물품검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포장용기나 이런 것을 파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손실보상 대상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들도 생기고 또 검사 자체가 약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부 개정안에는 포장용기나 운반수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 넣겠다 하는 걸 명시적으로 하는 안을 들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는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아닌 곳에 있는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 세관 직원이 해당 구역에 가서 검사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신고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이고 건당 평균 징수액은 약 7000 원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일반적인 수수료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 검역본부 등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유관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 정보 및 우범화물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류성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입수·활용의 법적 근거와 우범화물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장이 우리나라에 반입·반출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 사실 등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정보,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위치정보 수집 근거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2쪽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관련해서 첫째, 개인정보 부분 관련해서 관세법 264조는 관세청장이 타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264조의10에서는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마약 우범자의 개인정보는 위 조항에 따른 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세법 264조의10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에 마약 관련 정보가 포함될지라도 동 조항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약밀수 고위험 개인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의 입수·활용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에 대한 요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입국 및 물품 통관검사 시 마약밀수

고위험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향후 관세청이 우선 외교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의 마약밀수 예방을 위한 해외 마약범죄 사실 그리고 법무부에 대해서는 마약범죄 전과자의 마약밀수 예방을 위한 마약범죄 이력 그리고 식약처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 복용자의 마약밀수 예방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정보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예방을 위한 국제우편물의 배달정보 등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공받아서 마약밀수 고위험 개인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밀수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추후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제한 규정을 고려해서 관계 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정보 제공의 범위를 모든 마약범죄가 아니라 기한 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마약밀수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심의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5쪽 두 번째,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현재 관세청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수화물을 포함한 우범화물의 효율적 감시단속을 위해서 그간 위치정보를 활용해 왔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컨대 관세청은 GPS가 탑재된 전자봉인을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우범 보세운송 화물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입국 여행자의 수하물 중에서 개장검사가 필요한 수화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수하물이 세관구역을 통과하는 순간 포착하는 방식을 통해 위치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마약밀수사범의 효과적 검거를 위해서 비대면 통제배달되는 마약 은닉 특송·우편소화물의 위치정보 수집 필요성이 급증하였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약 은닉 특송소화물에 GPS를 부착해서 비대면 배송한 후에 특송·우편소화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6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치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모든 여행자 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므로 위치정보 수집에 과도한 제약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 위치정보 수집 대상을 수정의견의 1호 현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보세운송물품과 2호 밀수혐의가 있는 휴대품 그리고 3호 마약류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위치정보의 수집 근거를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조항에 신설하고 있지만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조항의 내용과 위치정보 수집은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개정안 266조가 아니라 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을 별도로 신설해서 관세청장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는 현재 하고 있는 보세운송물품 중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2호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 밀수혐의가 있거나 위해물품 등으로 인정하는 물품, 제3호가 수입하는 마약류의 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을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다른 법

률의 특별한 경우 중의 하나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해서 격리된 사람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쪽은 인용 조문에 대한 조문 정비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마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필요성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관세청장이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우범화물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게 마약과 같이 명백한 위해성,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봐도 위치 추적이라도 해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위치 추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칫…… 보세운송물품, 밀수혐의가 있는 휴대품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다는 취지 그리고 그 앞의 조항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마약류로 특정되어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위치정보 수집 관련 조항도 마약류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은 청정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약 소비국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국경, 그러니까 우리 관세 국경에서 어떤 형태의 수단에 의한 마약의 유입도 차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 두 번째는 화물에 의해서, 특송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마약에 관련되는 걸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위치정보의 수집에 별도의 조항 266조의2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별도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던, 혹시나 마약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해서 너무 많은 위치를 파악해서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너무 과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문을 좀 정리를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일단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정부 입장보다도 더 좁힌 거지요? 좀 더 한정된 거지요? 아니, 정부 입장이 아니라 그 원안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류성걸 의원안에서 더 좁힌 건데 정부는 그것보다 더 좁혀야, 더 구체화하고 더 한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우리 법체계가 좀 무질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를 절대시하는, 개인정보법이나 정보위원회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절대시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보호가 엄격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이것은 그 사람한테 별로 크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조금 그 정보를 활용한 사람은 굉장한 규제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정보가 이용된 본인은 크게 손해 본 것도 없고 피해 본 것도 없는데 그걸 이용한 사람은 굉장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외국은 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개인정보를 절대시하는 바람에 빅데이터 산업이 완전히 죽어 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이 돼 가지고 개인에게 치명적인, 그렇게 절대시하면서도 또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돼 버리고. 국회의원은 공인이라고 하지만 전화번호 다 공개돼 가지고, 제가 동의해 준 바도 없는데 다 알려져 가지고 막 문자폭탄 날아오는 게 또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법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개인정보 절대시해 놓고 실제 현실은 완전히 엉망이고, 그러면서 또 공익적 목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건 또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또 규제가 심해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절대시하는 것은 저는 법 기술을 잘 발휘해 가지고 그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줬을 때는 하지만 나머지, 산업에 활용한다든지 또 이 법안의 취지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때는 너무 절대시해 가지고 꼭 묶어 두는 것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문을 조금 더, 조해진 위원님 말씀도 반영을 하고 또 차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넓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첫 번째, 개인에 관련되는 사항은 시행령 새로 만들 때 전문위원께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반영을 해서 시행령도 같이 한번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안들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정부안입니다. 110쪽입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기존 형벌(1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던 것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2쪽입니다.

개정안은 경미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해서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작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 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검토의견 중에서,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국세기본법에 맞춰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형벌 규정인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는 측면으로 형벌은 제외하고 과태료는 조금 올렸습시다만 그걸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액 관련해서, 지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과 통고처분에 의한, 아니면 과태료에 관련해서 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을 더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는데 5000만 원 하면, 그것은 과태료가 되고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원식 의원님과 류성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2건의 법률안은 현행 국가관세망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목적에 있어서는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목적과 국가가 기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범위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님 안은 국가관세망의 운영 및 관리, 국가관세망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외에도 국가관세망의 해외보급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이 국가관세망

의 해외수출 등의 사업을 민간 영역에 맡기는 류성걸 의원님 안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직원 승계와 관련해서, 2010년 이후 운영사업자로 지정돼서 국가관세망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관세망연합회의 권리·의무, 임직원 등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님 안은 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 재산, 모든 임직원의 고용을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포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류성걸 의원님 안은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학식 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하며 설립위원회가 정관, 권리·의무 및 재산의 처분, 임원을 제외한 연합회 소속 직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서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가관세망이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 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해서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를 말합니다.

국가관세망은 수출입 통관·화물, 관세 징수·환급 등 단위시스템을 바탕으로 업체, 관세사, 항공사 및 960만 개인 사용자 등 그리고 식약처 등 64개 요건확인기관, 국세청·기재부 등 50개 대외기관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116쪽에 국가관세망의 시스템 운영도가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청장은 국가관세망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10년 최초 지정공고 시 단독 응찰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국가관세망의 기획·조사·컨설팅, 연구 업무와 해외보급을 위한 시장개척·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6년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간기업들이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118쪽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연합회의 수입에서 위탁사

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41% 정도입니다.

한편 미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관세시스템을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출연회사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안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제정법 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류성걸 의원님 안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타 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재정정보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에는 개별 기관설립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특허정보원 등의 경우에는 개별 기관설립 법률이 아닌 사업법률의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경우에도 작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과 관련해서 첫째, 그간 민간에 위탁되어 온 국가관세망을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관세망 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관세정보원이 설립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국감조사법에 따른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등 민간위탁 방식에 비해서 국회와 국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부 디브레인의 경우에는 2007년 처음 구축된 이후에 민간위탁되어 오다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금까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0쪽은 국가정보시스템 운영 사례를…… 특허청까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청은 민간위탁, 국세청 이하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만 별도의 근거 법률이 있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법의 조문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관세망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첫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관세청이 직접 국가관세망을 운영·관리하는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직접 운영은 소속 부처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돼서 행정부의 수직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국가관세망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며, 운영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연합회가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이후에 연합회의 국가관세망 사업 독점 문제 그리고 관세청 출신 직원들의 취업 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국회의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서 국가관세망을 관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인력 증원을 요구하였지만 무산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2쪽에 관세청이 직접 운영을 시도한 행안부 직제 노력이 무산된 표를 적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과 국가관세망 해외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우원식 의원님 안은 그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류성걸 의원님 안은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만 포함하고 해외보급 사업은 현행과 같이 민간 영역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가관세망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사업은 손실가능성도 높아서 공공기관이 되면 손실을 국고로 보전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가능하고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이 될 경우에는 민간이었을 경우에 비해서 수출 사업의 유인이 제한되어 수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임직원 등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추후 정부는 임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연합회에서 관세정보원에 승계될 사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전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임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임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서 법률안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 시에도 이에 준하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22년 기준으로 연합회의 총인력은 175명이고 인건비는 약 111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관세망 운영 인력은 140명, 국가관세망 해외 사업 인력은 50명인데 우원식 의원님 안에 따를 경우에는 190명이 되고 류성걸 의원님의 안에 따를 경우에는 140명 정도 예상됩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한편 류성걸 의원님 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는 정식명칭을 유지한 채로 약칭을 ‘국가관세망’으로 정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데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국중망’으로 약칭되기도 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세청의 의견을 감안할 때 정식명칭 자체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약칭을 ‘관세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약칭을 ‘정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관세정보원 약칭 ‘관세정보원’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칭에 혼동이 올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약칭을 ‘원산지정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범위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관세정보망을 운영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검토의견 중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과 해외 사업을 다 가져올 거냐, 아니면 관세망 운영 사업만 들고 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로 봤을 때는 운영 사업만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임직원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기관이 설립되는 모양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고용승계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회에서 표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120쪽 표에 나와 있듯이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청이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시스템을 민간이 운영을 하는 부분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또 그 민간이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자체 수익을 위한, 예를 들어서 해외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원식 의원님 안은 완전히 새로운 제정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 원산지정보원 할 때도 관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관세법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전체 직원이 190명이 되는데, 물론 업무에 종사하는 현실점 딱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고용승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따로 어떤 조직을 만들

어서 해외 사업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수준을 가지고?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관세청에서 오신 분이에요?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수출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걸로……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규모로도?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괜찮겠습니까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으로,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하는데 자기들…… 사실 업무라는 게 서로 연계가 돼야 해외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데, 괜찮다 이런 말씀이지요?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민간위탁을 정부가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산은 지금 운영하고 유지해서 토털 한 2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유동수 위원 그러면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증가는 인건비 한 8억 정도로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했더라고요.

○유동수 위원 8억 정도 증가?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했는데 아무튼 그 금액 외에는 추가로 필요한 게 없어서 기재부에서도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

먼저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정부 입장이 운영 업무하고 해외 사업을 성격상 따로 하는 게 낫겠다. 전자만 공공기관이 하고 후자는 그냥 민간위탁으로 두는

게 좋겠다고 하신 그 취지가 뭔지하고, 둘 다 공공기관으로 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 좀……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첫 번째 취지는, 정부 방침이 공공기관을 좀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위주로 공공기관을 하자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해외수출 사업이 최근에는 상황이 좀 좋습니다만 해외수출을 하려면 평균 한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한 나라 수출하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적자도,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적자를 계속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또 예산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두어도 그 업무가 지속가능성이 있나요?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추정을 해 보니까 한 4년,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계속 적자가 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살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년 해외 업체 발굴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하는 데 마음에 큰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아마 차관님께 여쭙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공기관을 따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2019년, 21년도에 증원 요구가 다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무산이 됐는지 일단은 여쭙 보고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기관에서 운영을 직접 하기도 하고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는 이미 비영리법인으로 기관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정부기관화, 그러니까 정부 조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기관이 재정정보원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기관을 전환해서 가는 게,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면 아까 관세청에서 나오신 분 잠깐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견해에 있어서 기재부와 관세청하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건가요?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 번 노력한 것을 기재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정부 인원을, 공무원을 130명, 140명을 확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청과 기재부가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세청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장혜영 위원 초기에는 직접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과세정보 그리고 세금 관련된 정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것처럼 관세청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세청하고 기재부와 같이 논의를 해서서 절충하셨다고 하시니 저도 대단히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지금 제정법률안하고 또 관세법 개정 사항인데,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해진 위원 저는 개정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개정으로?

○조해진 위원 예, 제정법보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개정안으로 해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그 분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특히 승계할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물론 지금 현재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공공기관이라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뒤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정한 대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아까 앞에서 정부망 운영사업자가 공공기관도 된다고 하면 운영사업자는 빠지고,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 또는 부당한 지정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장비 등 부실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시스템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에 대해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망 운영에 기여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내용은 충분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앞에 공공기관이 설립된다 그러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 조정을 해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는 정부안입니다.

129쪽입니다.

개정안은 담핑방지관세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상 담핑방지관세 납부 대신 담보의 제공도 가능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담핑방지조치의 정의를 신설하며 시행령에 규정된 재심사 기간 중 기존 담핑방지조치의 효력 유지에 관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법률로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도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상계조치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0쪽에서는 한자로 된 ‘과오납금’의 표현을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정비하는 내용이고, 다만 법 22조 2항 및 3항에서도 ‘과오납금’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용어하고 조문 정리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해진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요.

정부안에 법률용어 관련해서 어려운 또는 잘 쓰지 않는 한자는 한글로 바꾼다 이런 게 있어 보이는데, 한글을 한자로 바꾼다라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세제실 근무하면서 한자가 오히려 더……

위원님 취지는 아마 한자가 좀 더 명확·명료하거나 느낌이 잘 오니까 한자로 바꾼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가끔은?

○조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회의장에서 입법을, 처리하다 보면 일제 용어라든지 오래된 용어라든지 안 쓰는 용어라든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용어라 그러면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한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쉬운 한글인데 이걸 또 한자로 축약해 가지고 개정하는 게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그런 데 대한 무슨 기준이 있는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 기준은 저는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일관되게 꼭 유지되고 있고 주로 법제처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또 각 개별 세법 내에서 저희들 세제실 차원에서 용어를 확 순화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은 해 봤는데, 너무 길고 늘어진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로 한자로 바꾸는 경우는, 원칙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 개별적인 사례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32번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법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0)

3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7)

3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0)

(15시13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1항부터 제323항까지 이상 3건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시기를 일원화하는 정부안입니다.

132쪽입니다.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현재 국제거래명세서, 그다음에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하고 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해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개별서식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국제거래명세서 등 개별기업 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중소 규모 법인과 마찬가지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별도로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애초에 이렇게 대기업들을 중소 규모 법인들과 다르게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해 줬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뭐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넉넉하게 해 주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서류를 낼 의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국제거래 관련해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내니까 그냥 거기에 부표로 내면 되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였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거래 같은 경우에 좀 더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분석할 필요성이 더, 소멸시효라는 부과제척기간 이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거래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중소기업하고 맞춰서 당겨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국제청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과세 당국이 국외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발의 이후에,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다만 국제거래명세서 서식에 가상자산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관련 용어·범위 조정하는 정부안입니다.

136쪽입니다.

개정안은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동료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국제조세조정법과 기재부 고시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간 용어와 범위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1번입니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이행을 위한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을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금융회사 등의 범위와 이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OECD의 조정 권고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기 금융거래 정보의 대상을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용어·범위 정비로 인해서 추가되는 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정기 금융거래 정보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라고 함께 조정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조세조약의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조약 적용 및 해석,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등의 협의를 위해서 주요 계약상대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기 이행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세조약의 이행 등 국제조세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 체결국 94개국 중 50개국의 조세조약에 공동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규정을 이미 두고 있고 현재 일본과의 정기 양자협의체 설치가 합의되었고 프랑스와 정기 양자협의체 설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세조약의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역시 의견이라기보다 질문인데요.

이미 조약들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이행협의체 근거를 만드는 것에 어떤 실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 정병식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에도 이행협의체가 있는데 관련 FTA 이행법률안에 협의체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요. 저희도 조세조약에 공동협의체를 두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협의체 근거를 두게 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도, 특히 국제청이라든가 관계 부처랑 같이 회의할 때 참석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할 때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조문이어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냥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형식적으로 안정화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

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잔액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외국인인 국제기관의 종사자 또는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의무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예를 들면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나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주한프랑스 문화원에까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조금 전의 141쪽에 들어가 있는 불필요한 게 다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저희들 굳이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은 이렇게 하면 다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왜 개정세수효과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장 염경윤 국제조세제도과장 염경윤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수효과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신고액 중에서 그런 사람이 향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측정한 거라서, 정확하게 현재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미 신고해서 과태료 내고 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하는 정성호 의원님과 정부안입니다.

143쪽입니다.

현행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신탁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은 기존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활용해서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신탁재산의 고유한 성격을 고려해서 신탁설정·이전 시 위탁자가 건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려는 것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해외신탁제도를 이용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명목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신탁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주자·내국법인이 미신고 해외소득 및 재산을 해외신탁재산으로 편입할 경우에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검증하기 곤란해서 과세일실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니까, 특히 정성호 의원님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큰 차이가 결국은 신고의무를 누구한테 부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그것을 위탁자에게 명시적으로 딱 한정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정성호 의원님 안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 밖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법안이 돼 있는데 오히려 중복될 수 있고 혼란스럽고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이 건은 그냥 위탁자에게 딱 특정을 해서 부과의무를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

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우선 간단히 작년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보시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할 경우에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는 두 가지 큰 규칙이 있는데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있습니다.

소득산입규칙은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에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최종 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되거나 아니면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에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작년 말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24년부터,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부분과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 등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입법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부분은, 작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 당시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예정국이 25년 또는 그 이후로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할 경우에는 국내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과세가 이루어져서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 등을 반영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입법하는 부분은, 작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 당시 모델규정의 내용 중에서 입법이 불완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OECD가 올해 2월과 7월에 발표한 행정지침의 내용을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행시기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산업보완규칙은 현행과 같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모델규정을 반영한 부분 그리고 행정지침을 반영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시행시기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산업보완규칙은 1년 유예해서 2025년부터 적용하고,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산업규칙은 현행과 같이 2024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규정이나 행정지침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72쪽에 일부 인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전체 필라1과 필라2 관련된 사항이고 또 설명을 잘하셨듯이 148쪽은 필라2의 소득산업규칙과 소득산업보완규칙 관련 내용인데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관련된 사항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나머지 보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거고, 결국 소득산업보완규칙이라고 하는 시행시기를 1년 미루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조금 눈여겨봐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은 국제적으로 소득산업규칙 부분은 다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일부 국가에서 지금 입법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모회사가 아니고 자회사가 징수권을 가지는 소득산업보완규칙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다 1년을 미뤄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년 1월에 그냥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징수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해외투자나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굳이 그것을 우리가 달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서 우리나라 7.5억 유로, 그러니까 1조 클럽 이상 기업들의 영향이 어떤지하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장이.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사실 작년 말에 이미 입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입법이 됐고 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 단계 중에 있고요.

물론 시행령 사항을 지금 입법예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모든 기업들이 완벽한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외부 로펌들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수시로 정부 주최의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로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컨설팅도 수차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OECD에서의 논의 과정 그리고 또 논의 결과, 또 우리 세법하고의 정합성 내지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의견을 주고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현시점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또 OECD 논의 과정이나 EU나 미국의 사정변경이 없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거는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고 그 소득에 대해서 25년 7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법의 완성이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령까지 다 나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제청하고 상의 등등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실제로 기업 운영을 하시면서 1년 동안 정확한, 각 기업별 또 해외 자회사별 이런 부담들을 계산하셔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충분하다,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 따라오겠다라는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좀 부담이 된다, 한국이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빨리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는데 준비 기간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늦춰야 된다 그런 의견까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게 국제적인 보폭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5년 1월 1일에는 시행이 문제없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재로서는 입법 자체를 완성한 국가는 나라 이름으로만 따지면 아직 한 십여 개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나라들인 EU 국가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정기 협의회, 아직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외국 간의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대부분의 EU 국가들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아직 가지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등등 때문인지 아직까지 입법이 완성이 안 되고 있는 단계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미국 한 나라가 빠진다고 나머지 국가들이 다 같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다 같이 연기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금년 말까지 입법 조치가 완료가 되느냐, 아니면 만약 그거 자체가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내년 이후로 늦어지고 그래서 EU 다수 국가들이 25년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또 어떤 부정적 효과 이런 걸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면 미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준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EU의 다수 국가들이 준비가 된다면 우리도 지금 법안을 개정하는 시한에는 맞춰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현재로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 부분은 2개 파트인데 뒷부분들은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문은 불어로 돼 있습니까, 영어로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영어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영어 해석 과정에서 아주 민감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잘못 해석돼서,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취지는 원문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은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관세법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부 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HS코드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미묘한 어감이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해석했던, 우리 법을 적용하면 다르게 되는 부분인데 원문에 의하면…… 원문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또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사항 없으시면 시행시키는, 소득산업보완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규정에 따라서 조문을 잘 정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는 심사를 마치고요.

3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922)

3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29)

3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68)

(15시35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4항부터 제326항까지 이상 3건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를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아침에 제가 기재부에서 조세소위 요구자료 주신 거 관련해서 보안을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드 카피로 받은 거 말고 의원실 차원에서 누락된 부분을 좀 보려고 파일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파일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저희가 협력관한테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파일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하드 카피가 꼭,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다른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장혜영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파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그러지 못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85쪽,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양기대 의원님 안입니다.

186쪽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상향입법을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원산지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고 향후 전산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원산지증빙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할 경우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동 법률에서는 FTA 협정문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FTA 협정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소명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산지확인서 등은 국내기업의 FTA 이행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서류로서 해당 서류의 정의 역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탄력적으로 서류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FTA 협정문하고의 정합성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현재 법안에서 법으로 올리려고 하는 서류를 저희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합성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입니다.

191쪽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자는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유 등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추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에 보시면 현재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1483개사가 지정돼 있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1만 3301개사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김주영 의원님 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다만 벌금부과 대상과 관련해서 김주영 의원님 안은 신청 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증을 받지 못한 자도 처벌받게 되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한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김주영 의원님 안도 취지는 정부안과 사실상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미수범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정부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으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과 YES FTA 전문교육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FTA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간 관세사를 파견하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법, 원산지검증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사업 규모는 약 6억 원이고 최대 200만 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은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해서 집합·온라인·합동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9억 7500만 원이고 약 7000명 내외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수출 시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을 농어업인까지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22년 4분기 기준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92.1%가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데 비해서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 수출되는 비율은 55%에 불과합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법률에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원산지검증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이 FTA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인이 아닌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법률에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중견기업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재원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관세청에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하는 부분도 내규로, 훈령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이 부분은 관세청에서 더 열심히,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조금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관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하는 정부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신설하는 정부안입니다.

201쪽입니다.

현행법상 FTA 협정관세와 관련된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서 일반법인 관세법상 보정이자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대해서도 가산세 면제사유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증빙 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재 가산세 면제사유에 1번과 2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보정이자 면제사유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보정자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제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서 관세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855)

(15시45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7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204쪽, 관세사 자격자가 관세법인 등에 채용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은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명, 사무소명, 해당 사무소 소재지,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세법인 등에 채용되어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관세행정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관세사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가령 관세법인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직무보조자로 채용하되 실질적으로는 수출입 컨설팅 업무 등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세사 수임제한 규정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등록관세사가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나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세법인이 신입 관세사 합격자들을 등록하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채용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관세사로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세사회에 따르면 22년 9월 현재 미등록 관세사 56명 중 약 44명이 20대 및 30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미 무등록 통관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자가 등록 없이 통관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직퇴임관세사는 신고서류에 담당관세사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통관업을 수행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 소지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사무소 등에 사무보조자로 근무하는 것만으로 통관업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관세사 자격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 전문자격사법의 경우에도 법인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경우까지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까 미성년자에 시험 자격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과 관세사로 등록을 해야 등록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세사 자격은 있지만, 관세법인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세사가 해야 될 업무,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 등록을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관세법인들이 어떻게 인력을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강제를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경우는 무조건 등록해라 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 실태조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렇게 운영하는 법인들이 조금 있다고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제도적으로 등록의무까지 반드시 부여해야 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라고는 저희들이 아직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실태 파악을 좀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실태 파악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등록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서 일하겠다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실태 파악하시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자료 제7권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로 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을 정리한 소위 자료 제8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5)

3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4)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41)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8)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3)

3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3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

3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4)

3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9)

3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0)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90항, 제301항 그리고 제328항부터 제335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8권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1번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한시 적용하고자 하는 이

양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농·임·수산물의 출하를 위해서 농·임·어업인에게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가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외에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류 또는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농어민에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 영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농수산물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서 이를 공급하는 농어업인은 면세사업자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임·수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어서 세제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aT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농산물 유통비용 중 물류비는 27.7%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 단계별 물류비 비중은 산지 출하 단계가 6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둘째, 영세 산지 농어민과 임업인은 면세사업자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서 부가세 절감을 위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운송사업자와의 거래를 기피하고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의 거래가 성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운송물 파손·분실·도난과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농어업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통해서 무자료 거래의 퇴출로 농가 등의 거래 규모와 운송 품목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돼서 품목별·규모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현재도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 중에 있으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6쪽 둘째, 특정 재화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의 사례가 없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농어업인, 임업인에 대해서 세제상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전문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기자재 이런 부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또 운송비용까지 영세율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농·임·수산물 화물하고 일반 화물하고 함께 운영하거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도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영세율 이외에 다른 지원 방안은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원 방안의 내용이 농·임·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지금 세제뿐만 아니고 재정, 다양한 측면에서……

○조해진 위원 이 운송용역에 대해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운송용역에 대해서만 따로, 영세율을 제외한 다른 방법……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농·수협, 조합 등을 통해서 공동출하 이런 쪽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그런 구조적인 접근은 가능하긴 할 텐데요. 그게 아닌 세제상으로 운송비를 절감하는 건, 단순히 생각하면 운송비의 10%를 세액공제 해 준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을 텐데什么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물류비 10% 세금에서 돌려줄게, 뭐 하니까 돌려줄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간접세가 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물류비가 비싸다는 문제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니깐 부가세를 아예 빼 달라는 건데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모든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어떤 중간 B2B 용역에 대해서 다 영세율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조세체계의 균간을 흔드는 문제고.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용 가능성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의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문제가 없으니깐 정말 특단의 정책으로 영세율을 해 주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이 있고 형평에 안 맞고, 더군다나 집행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세제로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뾰족한 방법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조해진 위원 저도 영세율 적용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그런데 이양수 의원님의 발의 취지가 있어서…… 제가 심사 과정에서 계속, 이양수 의원실에도 한번 협의를 해 볼 텐데 대체 방안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농가·어가·임가 가구소득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드려야 되고 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제의 기본 틀을 흔들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에도, 아까 실장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면세라면 당연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하기 위해서 틀을 흔들게 되면 다른 것과의 관계가 계속 제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영세율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한번 정부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은 취지는 공감을 하되 조세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

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박정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해서, 올해 5월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올해 12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북한 인접지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말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북한 인접지역은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등 15개 시군이 있는데 이는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경지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사,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와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이외에도 평화경제특구법은 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입주할 수 있

는 기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등의 활동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에 24년 말까지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에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제도는 EU의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폐지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2017년 12월에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비거주자에만 적용돼서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되 법인세·소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2019년부터 폐지하였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EU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 인접지역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분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현지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현재 지역특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와 감면율이 동일하지만 개정안의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규정해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두 번째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등으로 입주기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접경지역과 북한 인접지역의 범위가 동일하지만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 중 향후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통일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만 첫째,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세제 지원에 비추어 특례 신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방에서 동 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 갈등의 유발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음 둘째, 동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 나 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입주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23년 말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등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본재 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특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만 두 특례는 최근 저조한 실적을 감안해서 정부안 기준으로 23년,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특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평화특구의 조성 및 개발을 촉진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사업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개발특구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한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개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세 면제 특례의 도입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의 경우에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만 관세 면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동 특례 감면 실적이 전무해서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 참고로 기재부는 평화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에 대해서 특구 운영 계획이 구체화된 이후에 입주기업의 업종, 규모, 수,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파악한 후에 관세 면제 혜택의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자본재 관세 감면의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경우에도 국내 타 지역의 입주기업 또는 타 접경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의 관세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관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

어서, 차례대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차례대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일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을 해 달라는 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EU 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인세 감면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어긋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기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하는 부분은 14페이지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접경지역의 지원 대상 지역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를 하는데, 접경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에 대해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돼 있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니까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이전해 오는 기업까지 100%, 2년 50% 이런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결국 창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제도로 혜택을 받게 되고, 추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 줄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인데 전문위원 검토의 견대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세제 지원 효과, 그러니까 수도권과밀지역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세제 지원하는 부분이 될 경우에는 결국 경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 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는 법인세하고 다르게 입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운영될지를 모르고,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수입하는 데 관세를 면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주 쪽에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해서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그런 관세 감면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유동수 위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향후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실 현재 굉장히 어둡지만 장기적 전망으로 보나 이 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 조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특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그 지역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지역적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조특법에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우리가 진출한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우리 쪽 지역에 공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한의 근로자들이 우리 쪽에 출퇴근하면서, 그런 모델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그런 데 꼭 필요한 평화경제특구법이기 때문에 다른 외투기업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조특법에 조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번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김병욱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운법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즉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해상운송 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해상운송 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비율이 40% 이상

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1%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3%를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세액공제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신설에 따라서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화주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기업은 20년 3개사, 21년 및 22년 각 6개사, 23년 3개사로 총 18개사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비용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정안은 화주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요건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2017년 세계점유율 7위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매출액과 선복량 등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해운산업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화주가 국적 선사를 이용하는 비율인 적취율을 보면 아시아 역외로의 원양노선 적취율의 경우 16년 30.3%에서 17년 15.4%로 급감한 이후에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2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만 동 특례의 취지가 화주기업으로 하여금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요건을 완화할 경우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요건은 국적 선사 이용률을 제고해서 국내 선·화주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할 경우 동 제도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 중 하나로 201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에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최근 해상운송 운임이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의 설명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 특히 삭제를 하고자 하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에서 국내 선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요건을 단 이유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우리 국적 선사의 이용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국내 선사들의 재건·회복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적 선사 이용률이 18년에 전체 21.7%, 19년에 23.2%였다가 이 조항이 들어간 이후인 20년, 21년, 22년에는 23%, 26%, 29%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삭제하고자 하는 요건을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운임 부담을 덜어 주는 건데 운송 운임이, 해운 운임이 굉장히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상당히 안정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개정안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우리가 어떤 사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보다도 더 많은 비율이든지 금액이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이 경우처럼 만약에

없에게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런 형태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조금씩조금씩 올라가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 어때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분을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그 효과를 내겠다는 이유 때문에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요건을 달았고 실제로 그것에 따라, 꼭 그것만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효과가 조금 더 날 때까지는 이 조항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가 보네요. 그렇지요? 실제로 이 현황을 한번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현장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해운 관련되는 분 출석하셨나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정정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는 아직 하나도 안 왔고 지금 최대가 71.2%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할 범위는 아직 남아 있는데 무한대로 올리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면 때로는 다음 해에는 또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할 텐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수부하고 아니면 업계하고 이렇게 들어 보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 우수 선화주인증 제도가 취지도 좋고 꼭 잘 운영되어야 되는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작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세금은 저희들 법인세 세액공제가 하나 있고 그 외에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해진공의 보증료를 우대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아마 해수부에서 직접 컨트롤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직접적인 법인세를 깎아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농어민도 나오기는 했지만 물류비용에 대해서, 바람직한 물류비용 아니면 무언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이런 이유로 물류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당시에 굉장히 컨테이너 운임도 높았고, 그

러니까 우리 산업이 어느 정도 많이 무너졌을 때 특단의 대책으로 세액공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시대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인증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고 좀 안정이 된 선화주 인증기업들은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혜택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또 혜택을 받아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지니까 제도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이 차등이 되는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해수부의 의견과 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히 김병욱 의원님 취지에 관련되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항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리하고 그 의견을 같이 검토하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고자 하는 이용우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해서 수출 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입니다. 특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고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와 관련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서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

해서 현행 관세환급특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를 생산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는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1·2심에서는 국가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먼저 조세심판원에서는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공정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공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공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해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1·2심에서는, 시운전 단계는 선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고, 시운전 유류는 시운전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된 물품으로서 선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출물품의 생산용 기계·기구가 아니라 수출용 선박 자체에 투입되어 소모된 시운전 유류는 선박의 제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입법화하여 앞으로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허용할지 여부는 관련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소송에서의 조세심판원·법원의 법령 해석 및 추후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한편 다른 수출용 원재료와의 관계, 세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 시 엔진검사 공정인 주행검사 또는 제품 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 원자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자재로 볼 경우에 이와 같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도 환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시운전 유류는 생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에서 추가적으로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 입장은 꾸준히, 이것은 간접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재판 중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은 간접적으로 사용된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최종 확정판결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시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측하기 어렵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류성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수출용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재료 중에서 법에 의해서 원재료로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 원재료성 인정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운전용 유류 이게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는 그런 게 없는가 하는 게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시운전 유류가 여기에 포함되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다 원재료에 포함되어야 되는 새로운 절차가,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이형철 관세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공정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원재료나 부품 등은 다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시운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유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직접이나 간접이나 또 그 중간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직접, 간접 구분이 이런 시운전 같은 경우에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법으로 시운전용 유류를 원재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이슈는 없는 거네요. 현재 법에 의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시운전용 유류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이런 것도 당연히 원재료에 포함시켜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이형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처럼 만약에 다른 분야에, 자동차 또는 다른 큰 기계·장치 이런 부분들에서 유사하게 시동, 작동, 시운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또 들어가는 게 있다, 유사한 그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국장님, 아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선박을 만들어서 선박이 또는 자동차를 제조해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선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라든지 관련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만들어진 선박을 시운전 또는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간접적으로 이런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맞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의 시운전이건 선박의 시운전이건 다 간접이다 해서 국세청, 관세청이 집행하고 있고 심판원에서까지는 인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관세환급특별법 규정 자체에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게 생산용 기계·기구는 아니지 않느냐, 선박 그 자체니까…… 선박을 만들기 위한 기계에 들어간 기름이면 당연히 그건 대상이 아닌데 그 기계가 아닌 선박 그 자체, 자동차 그 자체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소모가 된 거다, 이건 간접이 아니고 직접이다라는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직접, 간접을 구분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자 예시라고 보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 문구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1·2심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야 된다는 거고.

아까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이 설명드렸지만 이게 ‘(수출용 선박)’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 자동차 주행검사 할 때는 안 해 주냐, 당연히 국장 말대로 똑같은 시운전 유류의 개념을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대상 물품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운전 유류와 또 직접, 간접 사이에 뭔가 중간이 더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제기된 물건은 없는데 그건 국세청, 관세청의 그동안의 집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 또 쟁송이 붙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5번 신흥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액 농특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진선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현행 농특세법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등이 농특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는 국가·지자체·조합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등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한편 조특법에서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농특세법은 법인세 일반세율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세율 적용분과의 차액에 대해서 농특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서 농협, 수협 등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농특세가 비과세되지만 신흥과 새마을금고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농특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 인하돼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므로 동 제도의 효과성 회복을 위해서 신흥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둘째, 유사한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도권 외 지역의 금융환경을 신흥·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일부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조세지원 등을 통한 해당 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중은행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점포 비율이 약 30%에 불과하지만 신흥의 경우 71.1%, 새마을금고의 경우 66.1%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의 입법 목적을 감안할 때 현재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농어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둘째, 조특법상 법인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으로 신흥, 새마을금고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현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농·수협, 산림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비과세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거두어서 거기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혜받는 대상한테 거두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더라는 측면 때문에 비과세가 된 부분인데 여기에 비과세가 된다는 이유로 신흥, 새마을금고까지 비과세를 하자 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지금 차관님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시골이나 지방 가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농협, 산림조합 또 신협, 마을금고 이게 다 똑같이 필수 금융기관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존재하니까 지금 서민들이, 농민들이 다 건재한 거지 기본적으로 이것 농협, 수협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협, 마을금고하고 차등을 두게 되면……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농협, 수협의 경제력하고…… 기관의 경제력을 비교해도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훨씬 영세하지요. 기관 자체의 경제력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영세한 기관이고, 기관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지원이 더 필요한 기관이 신협이고 새마을금고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보면, 좀 전에 차관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농특세 비과세 목적이, 농림·어업인 지위 향상, 경쟁력 강화 이게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수협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협 회원, 금고 회원들도 사실은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 농업인들이고 어업인들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농협·수협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는데 이분들은 회비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농업인, 어업인도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또 그 안에서도 보면 농협조합원, 수협조합원들은 조합비라도 낼 수 있고 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영세한 분들이라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 그래도 이게 지역의 최말단 금융기관으로서 계속 존속되려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냥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

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유사한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간 과세 형평성,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조합법인이란 게 전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에만 있는, 농·수협 조합이 아닌, 어쨌든 신협과 새마을금고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그냥 계속 과세로 두고 갈 거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전문위원 지적 중에 법인세율이 1%p 인하돼 가지고 상대적인 감면특례 효과성이 줄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일반기업보다 과거에는 큰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그것보다 약간 줄었다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농특세 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감면 폭이 줄었기 때문에 감면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쨌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일반법인뿐만 아니고 이 조합법인들도 다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내려가서 상대적인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그 상대적 만족감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것은 또 다르게 판단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기획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조정하는 박성민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이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산유지 관련해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또는 총급여액 평균이 직전 2개 연도의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되고,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됩니다.

43쪽입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제금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사후관리로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하도록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을 현재는 중소기업만 되어 있는데 중견기업까지로 완화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작년 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가업상속공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만의 추가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44쪽 셋째,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특법상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제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45쪽,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계획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안은 가업상속하고 기회발전특구, 일종의 교집합적으로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문제만 보면 작년에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제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줄 거냐, 더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에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가업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두자라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그 한도나 대상 기업 이런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가업상속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 같은 교집합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업상속공제 할 때 같이 보도록 하고, 특히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기회발전특구라는 새로운 특구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특구의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굉장히 궁금했는데 주소지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방 어디 특구로 옮겼다 그렇게 해도 그 혜택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지금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금융소득세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가업상속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업상속이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관이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논의, 국회에서의 결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안에서는 일단 빠졌는데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가업상속받는 당시에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건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것이고 그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거다라는 게 많은 시장에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포된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하고 국세기본법 관련된 사항인데, 4건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먼저 국세징수법입니다.

7번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해제하는 김영선 의원님 안입니다.

2쪽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도록 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불합리한 사유 선정 또는 집행 오류로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경우에도 압류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체납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로 압류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종국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채상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9번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효에 해당하는 압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즉 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서 압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인데 이를 당초 압류에 세무공무원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 무효의 사유로 단정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무리한 압류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과세 현장에서의 갈등을 유발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는, 현재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입법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압류재산이 무가치한 경우입니다.

재산가치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유형에 따라서 객관적 가치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압류 당시 재산가치가 있었지만 이후 가치가 없어진 경우 이를 사후에 무효로 간주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 소유가 아닌 채상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현재 납세자가 아닌 채상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입법 실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압류의 효력이나 소멸시효와 같은 국세 징수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를 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가 일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영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액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2018년도에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결손처분은 종전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국세기본법상 국세 등의 납부의무 소멸 사유의 하나에서 결손처분이 96년도에 삭제됨에 따라서 국세징수법에서도 점차 변경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에서 삭제된 취지를 고려해서 결손처분 취소 사유를 확대 규정하고 납부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다가 2011년 국세징수법 개정 시 결손처분 규정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에는 국세징수법에 있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으로 옮겨서 결손처분의 명칭을 '정리보류'로 바꾸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결손처분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99년 이전, 종전에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99년도에 개정할 때는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

록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은 선의의 체납자, 즉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분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조사가 없는 자 등이 본인을 포함한 동거가족의 재산이 없고 직전 연도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결손처분 당시 고의적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는 경우에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10번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첫째, 사실상 국세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장기체납자로 분류돼서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종전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 사유를 보다 강화해서 재산이 없거나 무가치하고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선의의 체납자만을 구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정리 보류로 분류된 경우에도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개정안은 결손처분 이후에는 처분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는 등의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결손처분의 요건으로 체납자 본인, 배우자, 동거 직계존비속이 무재산 또는 징수 실익이 없는 재산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가 체납자의 동의나 협조 없이 결손처분을 위해서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의 재산을 임의로 조사·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입법화한다고 하면 각 세무서가 직권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신청을 통해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일선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둘째, 개정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거나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사유로 정지되더라도 체납 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세징수권의 확보를 지나치게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징수 유예 등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간이 도래할 경우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는 징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결손처분 당시 납세자의 고의적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의무가 다시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체납자 입장에서는 납부의무가 사실상 평생에 걸쳐 불확정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는 가령 결손처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체납액 규모와 체납 세목의 유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체납액 규모가 큰 체납자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개정안은 세무서장은 검토일 기준으로 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일은 개별 세무서의 행정절차 및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법과 10번의 기본법은 앞서의 징수법에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결국 어려운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 부분이 빨리 완성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일관되게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안이 제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첫 번째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즉시 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건 중에는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나 제삼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또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도, 이렇게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상에 여러 가지 것을 규정했을 경우에도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또 장기간 체납을 하고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거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조치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어떤 단계, 어떻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나 입법이 필요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집행하는 단계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 법안의 내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여튼 입법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겪는 정말 어려운 사례를 들으니까 정말 도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검토를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뭐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법적인 그런 것 외에, 아까 국세청에서 와서 방법적인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방금 그러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법이 됐을 때 상황이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배준영 위원 그런 거는 이미 여기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혹시 관련돼서 국세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동일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영선 위원님 제안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국세청의 의견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국세청징세법무국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도 아마 지적을 다 하신 것 같고요.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안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체납자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도와 드려야 되기는 하지만 국세 징수의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추가적인……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 중에 법체계 전체를 건드리는 것보다도 선의의 영세 체납자들에게 대한 도움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5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은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뜻인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17년에서 18년에 끝난 제도인데 다시 한시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선의의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털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가게 될 경우에는 ‘안 갚아도 되겠네’라는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잡아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사이에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체납의 원인이 직접적 사업자나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한 3년 정도 개인 또 체납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 제기 지원을 한다든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고통을 감면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 또…… 물론 큰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권과 8권 또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을 전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권부터 7권까지, 8권 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전체 예산부수법안적 성격의 세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관련되어서 매우 타이트하게 심사를 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오늘 8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추후 소위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열 가지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유동수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만약에 그렇게 10개를 논의를 한다면

각 위원님들께 다시 열 가지를 제출 또는 제기를 해 주십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유동수 간사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사진행 관련되어서, 일정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일단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심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사 규정은 법상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행상 지금까지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소위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사실 그 단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행상 그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찍 1회독을 끝낸 이상 2회독을 통해서, 최대한 이 소위 자리를 통해서 다른 법률들에 대한 의결을 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두 분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구체적인 사항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경호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후 조세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 후에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 준 현	고 용 진	류 성 결	배 준 영
양 경 숙	유 동 수	윤 영 석	정 태 호
조 해 진	주 호 영	장 혜 영	진 선 미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세 제 실 장	정 정 훈		
조세총괄정책관	박 금 철		
소득법인세정책관	조 만 희		
재산소비세정책관	이 용 주		
국제조세정책관	정 병 식		
관 세 정 책 관	이 형 철		
국세청장세법무국장	김 동 일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김 용 식		
심 사 국 장	한 민		
조 사 국 장	한 창 령		
국제관세협력국장	이 진 희		